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부처 지침에 맞도록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 가능한 조항 삭제(안 제3조제1항제2호)

나.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보완

- 지역조합(제2금융권)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일부 평가항목을 금융감독원의 평가항목과 일치(별표 중 제1호 및 제5호)

다.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방법에 시 홈페이지를 추가(안 제8조제1항)

라.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5조)

-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
-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(2)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

(폐지되기 전의 舊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”을 “구미시와의 협력사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보”를 “시보,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)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.

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관련)

평 가 분 야	평 가 항 목	배 점	비고
	계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32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(10)	
	- 국외평가기관	6	
	- 국내평가기관	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	4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2)	
	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)	7	
	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		
	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)	7	
	- 자기자본이익율(수익성)		
2.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*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	6	
	*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	
	- 대손충당적립율	2	
	소 계	18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5	
	다. 구미시 대출금리	4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	
	소 계	20	
4. 금고 업무 관리 능력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5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	7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8	
	소 계	20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7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5	
	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3	
	소 계	10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	5	
	나. 구미시와의 협력사업	5	

□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1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,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항목 2(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5(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 이내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금고 지정 방법)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3조(금고 지정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</u> <u>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</u> <u>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</u> <u>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</u> <u>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</u> <u>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다만,</u> <u>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</u> <u>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미만</u> <u>으로 하며, 사전에 의회의 의</u> <u>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① 경 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정	제4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① -- ----- ----- -----

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

② (생략)

제8조(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)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,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구미시와의 협력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) ① -----

----- 시보, 홈페이지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)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제1

	<u>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한 다.</u>
--	--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]

제77조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
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, 시·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]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102조(금고업무의 약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,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"란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2.3.26>

1.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

2.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

3.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
 4.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
-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,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2.3.26, 2013.3.23>

□ 안전행정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② 금고지정 방법

-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.

가.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
나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
다. ~ 라. <삭제>

③ 「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」 관련 유의사항

- ① 금고약정서에 ‘출연 등’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.

-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(물품 등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에 따라 처리

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

-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.

*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됨.

— <법제처 유권해석('02.5.31)> —

-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

③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

-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,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‘기부심사위원회’ 심의 후 처리

④ 「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」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

-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

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

-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.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